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

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네트워크정책과) 044-202-6425. 6427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사의 범위) ①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 지 ·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
- 2. 「방송법」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
- 3.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·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
- 4.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
-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용역업자의 범위) 법 제2조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"란 정보통신·정보관리·산 업계측제어·전자계산기·전자계산조직응용·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. <개정 2011. 3. 29.>

제4조(공사제한의 예외)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(이하 "공사업자"라 한다) 외의 자가 도급받거 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7. 17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8. 4. 17., 2020. 12. 8., 2021. 1. 5.>

- 1. 간이무선국 ·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
- 2. 연면적(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. 이하 같 다)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·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
- 3.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
- 4. 라우터(네트워크 연결장치)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(LAN)선로의 증설 공사
- 5.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 [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(LAN)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]
 - 가. 서버・백업장비・주변기기 등 전산장비(이하 "전산장비"라 한다)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
 - 나. 전산장비의 교체공사
 - 다.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
 - 라.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·방송설비·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
 - 마.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(소프트웨어개발비·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·데 이터베이스구축비 등)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
- 6.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 하는 공사
- 7.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
 - 가.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,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
 - 나. 무선통신설비의 이전 변경 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
 - 다.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 · 보수공사
- 8.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
-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 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1. 3. 29.>
- 1.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- 2.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

아 시공하는 자

제2장 공사의 설계·감리

- 제5조(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) 법 제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 을 말한다. <개정 2008, 12, 31, 2011, 3, 29, 2018, 4, 17.>
 - 1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
 - 1의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1조, 제68조제2항,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
 - 2. 「전파법」 제37조제1항, 제45조, 제47조, 제47조의2제1항·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
 - 3. 「방송법」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
 -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7조제5항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, 제32조의2,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
 - 5.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
- 제6조(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)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. <개정 2021. 1. 5.>
 - 1.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
 - 2. 천재・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
 - 3.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
 - 4.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,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"특급감리원"은 "특급기술자"로, "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"은 "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"로, "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"은 "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"로, "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"은 "초급 기술자 이상의 기술자"로 본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9. 8. 6.>
 - 1.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
 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 - 다.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 - 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(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억원 미만인 공사
- 제7조(설계도서의 보관의무)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
 - 1.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・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. 다 만,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,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・준공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·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
 - 2.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
 - 3.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
- 제8조(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9. 8. 6., 2021. 1. 5.>
 - 1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
 - 2. 철도, 도시철도, 도로, 방송, 항만, 항공, 송유관, 가스관, 상・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・재해예방 및 운용·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
 - 3.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. 다만, 「전기통신 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·도시철도·도로·방송· 항만・항공・송유관・가스관・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・재해예방 및 운용・관리를 위한 공사로서

- 2 / 18 -

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.

- 4.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
- 5.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공사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 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. 그 소속직 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8. 6.>
-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 한다. <개정 2018. 4. 17.>
- 1. 지하층
- 2. 축사
- 3. 창고 및 차고
- 4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

제8조의2(감리원의 업무범위)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
- 2.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확인
- 3.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
- 4.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
- 5.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
- 6.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·확인
- 7.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
- 8.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
- 9.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
- 10.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

[본조신설 2019. 8. 6.]

- 제8조의3(감리원의 배치기준 등)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.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(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)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.
 - 1.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: 특급감리원(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)
 - 2.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: 특급감리원
 - 3.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: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 - 4.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: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 - 5.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: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 -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.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1.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
 - 가, 동일한 시(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)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
 - 나.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
 - 2.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
 -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. 다만, 최 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 -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 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(표준품셈 등을 말한다)을 이

용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8. 6.]

- 제8조의4(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)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(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(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)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감리원 배치계획서(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)
 - 2.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
 - 3.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
 - 4.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(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각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해야 한다.
 - 1.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)
 - 2.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(신고)증
 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8. 6.]

- 제9조(감리원의 인정신청 등)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인정신청서에 졸 업증명서(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,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(제1호의 경우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, 제2호의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 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)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10, 11, 2,, 2013, 3, 23,, 2017, 7, 26,, 2019. 8. 6., 2022. 7. 11.>
 - 1.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(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)
 - 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외국인만 해당한다)
 - ②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, 2017, 7, 26, 2018, 4, 17, 2022, 7, 11,>
 - 1. 경력확인서
 - 2. 졸업증명서
 - ③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7. 11.>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신청인에게 감리원자 격증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7. 11.>
 - ⑤ 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, 신청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2. 7. 11.>
 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 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7. 11.>
 -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 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, 3, 23, 2017, 7, 26.>
- 제10조(감리원의 자격기준 등)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,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9. 8. 6.>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 ·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9. 8. 6.>

- 4 / 18 -

제11조 삭제 <2019. 8. 6.>

제12조 삭제 <2019. 8. 6.>

제13조(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)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시정지시
- 2. 감리원의 변경요구(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
-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4조(감리결과의 통보)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1. 착공일 및 완공일
- 2. 공사업자의 성명
- 3.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
- 4.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
- 5.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

제15조(공사업자의 감리제한) 법 제1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"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15조(공사업자의 감리제한) 법 제1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"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4. 4. 30.> [시행일: 2024. 11. 1.] 제15조

제3장 공사의 시공

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

- 제16조(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 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08. 10. 29., 2008. 12. 31., 2011. 3. 29., 2014. 8. 27., 2014. 10. 14., 2016. 6. 21., 2017. 7. 26., 2019. 8. 6., 2022. 7. 11.>
 - 1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(외 국인인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). 다만, 외국인인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)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 - 2. 기업진단보고서
 - 3.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(출력물을 포함한다)
 - 4.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
 - 5.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: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)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(「건축법」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)
 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, 신청인이 제1호, 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08. 10. 29., 2008. 12. 31., 2010. 5. 4., 2010. 11. 2., 2014. 10. 14., 2016. 6. 21., 2022. 7. 11.>
 - 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 - 3. 건물등기부등본(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)
 - 4. 「건축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
 - 5.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-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. <개정 2022. 7.
 -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단자, 진단방법, 관련 서류의 보존 등에 관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1. 6. 15.>

제17조(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)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

- 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08. 12. 31.>
-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.
- 1.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
- 2.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
- 제18조(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정 보통신공사업등록증(이하 "등록증"이라 한다)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(이하 "등록수첩"이라 한다)을 신청인 에게 발급한다.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.
 -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
 -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,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.
 -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9조 삭제 <2015. 3. 30.>

- 제20조(공사업 등록대장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 •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발 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. <개정 2019. 8. 6.>
 -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에 따 라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21조(등록기준)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・자본금(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사무실"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·자본금·사무실을 말한다.
 - ② 법 제15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"이란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 상을 말한다.
 - ③ 법 제15조제4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다.
 - 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 - 2.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,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[전문개정 2014. 8. 27.]
- **제22조(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)**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 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(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 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)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 서를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9. 8. 6.>
 - 1.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
 - 2.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
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 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9.>
 - 1. 양도계약서(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말한다)의 사본 또는 법인합 병계약서의 사본
 - 2. 제16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.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양도계약일(분할 또는 분할합병 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)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.
 - 3. 등록증 및 등록수첩
 - 4.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- 5. 공사(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한다)의 현황(발주자・공사금액・공사기간・하자담보책

임기간,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한다)

- 6.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(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- 7.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(법인합병신고의 경우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한 다)
-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0. 29., 2008. 12. 31., 2010. 5. 4., 2010. 11. 2., 2014. 10. 14., 2016. 6. 21.>
- 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- 3. 건물등기부등본(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)
- 4.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(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5. 「건축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
- 6.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④ 제17조,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공사업 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 6. 21.>
-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 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1.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⑥ 제5항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제22조의2(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) ①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 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 - 2.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
 - 3.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
 - 4.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
 - ② 시ㆍ도지사는 상속인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 게 상속신고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 - 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 - 3. 건물등기부등본(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)
 - 4. 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
 - 5. 건축허가서(「건축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한다)
 - 6.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
[본조신설 2019. 8. 6.]

제23조(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)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4. 8. 27.>

- 1. 영업소의 소재지
- 2. 대표자

- 3. 자본금의 변동(자본금이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, 공사업과 관련이 없 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)
- 4. 정보통신기술자
-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 하여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6. 6. 21., 2022. 7. 11.>
- 1.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: 해당 서류 없음
- 2. 영업소소재지의 변경: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
- 3. 대표자의 변경: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
- 4. 자본금의 변동: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
- 5.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: 경력수첩 사본(출력물을 포함한다)
-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(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1호.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(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 하며,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)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6, 21.>
- 1. 사업자등록증
-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3.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4.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6. 21.>
- ⑤ 제17조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, 6, 21.>
- **제24조(공사업자의 폐업신고)**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폐업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. <개정 2022. 7. 11.>
 -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 만,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5. 4., 2010. 11. 2.>
- **제24조의2(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)**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"국 가등"이라 한다)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 - 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
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인 공사업자
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인 공사업자
 -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7. 11.]

[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<2022. 7. 11.>]

- 제24조의3(연구・조사 업무의 위탁)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 체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1. 1. 5.>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
 - 가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
 - 다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 - 가. 공사업 관련 연구 조직을 보유할 것

- 나, 정보통신공사비 산정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
- 다. 공사업 관련 산업계 · 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·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, 7, 26.>

[전문개정 2016, 6, 21.]

[제24조의2에서 이동 <2022. 7. 11.>]

제2절 도급 및 하도급

- 제25조(도급계약 분리의 예외) 법 제25조 단서에서 "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 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8, 4, 17.>
 - 1.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·댐·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
 - 2.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 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
 - 3. 천재지변·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
 - 4.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 우
 - 5.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
 - 6.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
- 제26조(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)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<개정 2008. 12. 31., 2011. 3. 29., 2019. 8. 6., 2019. 12. 24.>
 - 1. 공사내용
 - 2.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
 - 3.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·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
 - 4. 천재·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
 - 5. 설계변경・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6.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
 - 7.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
 - 8.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
 - 9.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
 - 10.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
 - 1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
 - 12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험료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 금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해 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
 - 13.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(하도급의 경우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)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, 3, 23, 2017. 7. 26.>
- 제27조(시공능력의 평가)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 사업 경영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. <개정 2019. 8. 6.>
 - 1.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
 - 2.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(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 이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- 3.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
 - 4.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

- 5. 공사업자의 사망에 따라 공사업을 상속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(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. 다 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해당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 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9. 8. 6.>
- 1. 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
- 2.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, 합병 또는 상속을 한 경우
- 3.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한 경우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. 매 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의 경우에 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. <개정 2013, 3, 23, 2014, 8, 27, 2017, 7, 26.>
- 제28조(공사실적등의 신고)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(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 는 5월 10일, 개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)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8. 27., 2017. 7. 26., 2018. 4. 17., 2019, 8, 6,>
 -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08. 12. 31., 2016. 6. 21., 2018. 4. 17., 2018. 10. 30., 2019. 8. 6., 2022. 7. 11.>
 - 1.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
 - 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(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는 공 사업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)의 경우: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(해당 발주 자가 제5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공사 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)
 - 나.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(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)의 경우: 해당 공사의 발주 자 또는 수급인(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)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. 다만, 발주자,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(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 를 말한다) 사본으로 1)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.
 - 1)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
 - 2)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세금계산서(공급자보관용) 사본 또는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계산서(공급자보관용) 사본
 - 다. 「해외건설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 인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
 - 라.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자기 수요공사 시공실적확인 서
 - 2. 별표 4에 따른 신인도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
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
 - 가.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(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 함된 것을 말한다)
 - 나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
 - 다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 한 회계서류
- 제29조(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)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12. 31., 2018. 4. 17., 2022. 7. 11.>
 - 1. 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,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
 - 2. 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
 - 3.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
 - 4.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
 - 5.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
 - 6. 발주자(국가・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만 해당한다)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
 - 7. 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2. 31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- 제30조(하도급의 범위 등)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.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 -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 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"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"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.
- 제31조(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)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 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 • 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4. 17.>
 - 1. 하도급(재하도급)계약서안 사본
 - 2. 하수급인(재하수급인)의 등록수첩 사본
- 제32조(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)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·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
 - 2. 하수급인은 제1호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
 - 3. 발주자는 제2호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,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
 - 4.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때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 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,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 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
 -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9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0. 7. 21.>
- 제32조의2(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)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"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"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[하도급 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(직접•간접 노무비, 재료비 및 경비를 포 함하다)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. 이유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. 수급인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]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 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.
 - 1.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
 - 2.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
 -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 [본조신설 2014. 8. 27.]
- 제33조(하수급인의 변경요구)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.

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

- 제34조(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 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.
-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

사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: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
- 2.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: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
-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 구하여야 하며,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27.>
- 1.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(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)·군에서 행하여지 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
- 2.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
- 제35조(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)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"란 별 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・이동통신구내선로・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. <개정 2008. 10. 29., 2008. 12. 31., 2012. 7. 17., 2018. 4. 17.>
 - 1.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
 - 가.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 - 나.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 - 2. 사용전검사의 경우
 - 가.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
 - 나. 감리를 실시한 공사
 - 3. 삭제 <2018. 4. 17.>
 -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(설계 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)을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4. 8. 27., 2018. 7. 24.>
 -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8. 7. 24.> [제목개정 2016. 6. 21.]
- 제35조의2(착공전 설계도 확인)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(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 다)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(이하 이 조에서 "기술기준"이라 한다)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하다.
 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 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,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6. 21.]

- 제36조(사용전검사 등) ①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(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 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4. 8. 27.>
 - ②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4. 8. 27.>
 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 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4. 8. 27.>
 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. <개정 2011, 3, 29, 2014, 8, 27.>
 - ⑤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

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4. 8. 27.>

- ⑥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 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4. 17.>
- 제37조(공사의 하자담보책임) 법 제37조제1항에서 "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 의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9. 8. 6., 2021. 1. 5.>
 - 1. 터널식 또는 개착식(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) 등의 통신구공사: 5년
 - 2.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: 3년
 - 가. 케이블 설치공사(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)
 - 나. 관로공사
 - 다. 철탑공사
 - 라. 교환기 설치공사
 - 마. 전송설비공사
 - 바. 위성통신설비공사
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: 1년

제4장 정보통신기술자

- 제38조(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(이하"인력 양성기관"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., 2017, 7, 26.>
 -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교육의 기본방침
 - 2. 교육대상인원
 - 3. 교육과정 및 과목
 - 4. 교육방법
 - 5. 교육기간
 - 6.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-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 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 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, 2017, 7, 26.>
 -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8조(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(이하"인력 양성기관"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교육의 기본방침
 - 2. 교육대상인원
 - 3. 교육과정 및 과목
 - 4. 교육방법
 - 5. 교육기간
 - 6.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-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 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 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4. 4. 30.>

-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[시행일: 2024. 11. 1.] 제38조
- 제39조(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)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정보통 신기술자 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(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,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(제1호의 경우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, 제2호의 경우에 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)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10, 11, 2., 2013, 3, 23., 2017, 7, 26., 2022, 7, 11.>
 - 1.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(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)
 - 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외국인만 해당한다)
 - ②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, 2017, 7, 26, 2018, 4, 17, 2022, 7, 11.>
 - 1. 경력확인서
 - 2. 졸업증명서
 -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7. 11.>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신청인에 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7. 11.>
 -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 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 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 <개 정 2022. 7. 11.>
 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7. 11.>
 -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・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 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2. 7. 11.>
- 제40조(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)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 여 정하며,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 •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

- 제41조(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)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하 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,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- 제42조(협회의 감독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1.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(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)
 - 2.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
 - 3.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
- 제43조(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)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을 설립 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,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- 제44조(보증범위)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24. 5. 7.>

- 14 / 18 -

- 1. 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
- 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
- 3. 「해외건설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공사
- 4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
- 5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-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
- 7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
- 8.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
- 제45조(보증한도)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. 다만, 금융기관·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연도 중에 증 자를 하거나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 금을 기준으로 한다.
 -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. <개정 2021, 1, 5.>
- 제46조(수수료·이자 등)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, 융자금의 이자,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47조(조합의 감독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1.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(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)
 - 2.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
 - 3. 그 밖에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
- 제47조의2(조합의 사업) 법 제46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 - 1.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
 - 2.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
 - 3.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·연구기관에 대한 출연
 - 4.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
 - 5.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
 - 6.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
 - 7. 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 · 관리
 - 8. 법 제46조제1호·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

[본조신설 2019. 8. 6.]

제6장 감독

- 제48조(실태조사 기록·관리) 시·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- 제49조(업무정지 등) ①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 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정 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- 제50조(영업정지 등)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. <개정 2012. 7. 17., 2018. 7. 24.>
 - ② 시·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

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,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. <개정 2012. 7. 17., 2018. 7. 24.>

③ 삭제 <2015. 3. 30.>

- 제50조의2(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)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"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 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6. 4. 29., 2018. 7. 24., 2023. 9. 12.>
 - 1.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・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) 이내인 경우
 - 2.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- 나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
 - 다.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 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- 「상법」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 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

[본조신설 2014. 8. 27.]

- 제51조(이해관계인의 요구)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・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 - 1. 공사업자명
 - 2. 공사명
 - 3. 공사장소
 - 4. 법령위반사항
 - 5. 요구사항
- 제52조(행정처분기록부)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,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정 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를 기록 • 비치한다. <개정 2012. 7. 17.>

제7장 보칙

- 제53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8. 7. 3.,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21. 6. 15.>
 - 1. 법 제64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
 - 2.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
 - 법 제78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・징수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 <개정 2008. 12. 31., 2012. 7. 17.,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9. 8. 6., 2022. 7. 11.>
 - 1. 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・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・관리에 관한 업무
 - 1의2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
 - 1의3. 삭제 <2015. 3. 30.>
 - 1의4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,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
 - 2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
 - 3.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, 시공능력의 평가·공시, 정보의 제공 및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에 관한 업무
 - 4. 삭제 <2008. 12. 31.>
 - 5.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・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• 관리에 관한 업무
 - 6. 법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
 - 7. 법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

- 8.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
- 9. 제38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의 기록

[제목개정 2022. 7. 11.]

- 제53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 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시·도지사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9, 8, 6,>
 - 1.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
 - 3.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, 합병 또는 상속 신고에 관한 사무
 - 4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
 - 5. 법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
 - ②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-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 라 보호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4. 17.]

- 제54조(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)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21. 1. 5.> [제목개정 2021. 1. 5.]
- 제55조(공고)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4. 8. 27.>
- **제56조(보고)** ① 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3. 3. 23., 2014. 8. 27., 2017. 7. 26.>
 - 1.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현황
 - 2.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현황
 - ②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 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 호의 사항은 시 ·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9. 8. 6.>
 - 1.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자격증발급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현황: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
 - 2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결과: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 내
 - 3.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결과: 접수완료 후 30일 이내
 - 4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실시결과: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 일 이내
 - 5.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력수첩의 발급현황: 매분 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 이내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, 23., 2017. 7, 26.>
- **제57조(수수료)**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.
 -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
 -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, 3, 29., 2013, 3, 23., 2014, 8, 27., 2017, 7, 26.>
 - 1. 법 제73조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
 - 2. 법 제73조제1호,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: 현금
- 제57조의2(규제의 재검토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 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

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8. 27., 2014. 12. 9., 2017. 7. 26., 2019. 8. 6.>

- 1. 삭제 <2023. 3. 7.>
- 2.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: 2014년 1월 1일
- 3.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: 2014년 1월 1일
- 3의2.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: 2014년 1월 1일
- 4. 제8조의3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, 발주자의 승인 등: 2014년 1월 1일
- 4의2.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: 2019년 10월 25일
- 5. 삭제 <2020. 3. 3.>
- 6. 삭제 <2020. 3. 3.>
- 7.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: 2014년 1월 1일
- 8. 삭제 <2023. 3. 7.>
- 9. 제27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: 2014년 1월 1일
- 10.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: 2014년 1월 1일
- 11.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: 2014년 1월 1일
- 12. 삭제 <2023. 3. 7.>
- 13.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: 2014년 1월 1일
- ② 삭제 <2015. 3. 30.>
- [전문개정 2013. 12. 30.]

제5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 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다 만,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하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, 3, 23, 2017. 7. 26.>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,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08, 12, 31.]

[제목개정 2011. 3. 29.]

부칙 <제34494호, 2024. 5. 7.> (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

⑩부터 ⑪까지 생략

제3조 생략